

■ 작성지침

【학과(전공)】 : 2026. 4. 1. 기준 모든 학과를 가리키며, 교원의 소속에 따라 입력

(예 : 대학의 경영학과 소속일 경우 경영학과 소속으로, 경영대학원 소속일 경우 경영대학원 소속으로 입력)

※ 교원의 임용/발령된 소속학과가 없을 경우, '소속학과없음'으로 입력, 혹은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학과로 입력, 혹은 담당 업무와 밀접한 학과로 입력(전임, 비전임 모두 해당하는 공통사항)

【교원 조사대상】 : 휴직교원을 포함한 전체 재직교원(동일교원 중복입력 불가)

〈대학교원 자격기준〉

○ 「고등교육법」

제16조(교원·조교의 자격기준 등)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교원 및 조교의 자격)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강사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각 위원회”라 한다)의 인정을 받은 사람(교원의 경우에 한한다)

■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] 〈개정 2019. 6. 11.〉

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(제2조, 제2조의2,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)

(단위: 년)

연구·교육 직명	학력 경력연수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
교수		4	6	10	5	8	13
부교수		3	4	7	4	6	10
조교수		2	2	4	3	4	7
강사		1	1	2	1	2	3
조교		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					

비고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○ 대학 교원 정년(근거: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-17840호(2019. 11. 19., 대학 교원 정년 관련 안내))

구분	국·공립대	사립대
전임교원	만 65세	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하는 전임교원의 상한 연령은 만 65세 (단, 실제 정년은 개별 대학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름)
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		개별 대학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

- 「고등교육법」(일명 강사법) 시행(2019. 8. 1.)에 따라 국·공립대 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의 정년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 제1항 단서 조항(정년 65세)을 준용

-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명예교수규칙」 등에 따라 명예교수는 정년과 관계없이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자를 교원으로 임용 가능

-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하는 국·공·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상한 연령이 만 65세이므로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는 만 65세까지만 전임교원으로 입력 가능

<조사대상별 인정기준>

【전임교원】 :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「교육공무원법」 또는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하여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
- ② 2026. 4. 1. 기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
- ③ 국·공립대의 경우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·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
-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,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/강의전담교수, 연구전담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연구소 소속 교원(인문한국사업 : HK, 중점연구소사업 등)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
※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

○ 국·공립대 기금교수는 대학의 「기금교수운영규정」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「교육공무원법」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
-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(최소 조교수 수준) 전일제(full-time) 근무 계약교원

○ HK교수

- 국·공립대는 「HK교수 운영규정」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
-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

○ 산학협력중점교수 :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
- 국·공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
-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
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

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
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
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
③ 학교교육·지도,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
④ 학과(부)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, 여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

※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

【비전임교원】 : 겸임교원, 초빙교원, 강사, 기타교원을 입력

【겸임교원】 :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호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2026. 4. 1.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
- ②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

-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제1항각호, 제1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)
- ④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(본직)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
- ⑤ 원소속(본직)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)으로서 근무경력(원소속(본직)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)이 3년 이상인 사람(다만, 전일(全日)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(본직)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)
- ⑥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
-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업체 경력자이면서 민간 산업체 소속된 자가 대학에 파견 나와 대학에서 전일제(full-time)로 근무하는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- 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

겸임교원 인정 제외대상
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
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
③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
④ 본직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
⑤ 타대학 또는 자대학(부설기관 포함)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

【초빙교원】: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3호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2026. 4. 1.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
- ②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
-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제1항각호, 제1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)
- ④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
- ⑤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인 교원
 -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,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임용 위임을 받은 산학협력단, 사립대 병원 직장가입자 연구교수 등은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
 - 단, 국립대학 병원은 국립대학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 불가
- ⑥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
 -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업체 경력자이면서 전일제(full-time)근무 계약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 - 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

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
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
②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

【강사】: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2, 제16조 및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4조의8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개정 「고등교육법」 시행(2019. 8. 1.)에 따라 임용되어 2026. 4. 1.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
- ②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
-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)

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, 임금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, 복무 등 근무조건, 면직사유, 재임용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

※ 본 대학 직원이면서 강사인 경우 직원 및 교원으로 중복 입력 가능

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

【기타교원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3호에 따라 ‘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’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교원

① 2026. 4. 1.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,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을 제외한 교원

② 2026. 4. 1.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이며, 본교에서 전임교원,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만 각 교원별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원

■ 참고사항

-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(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)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